

보 고 사 항

□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

1.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구의 건
4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5.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
6.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반대 결의안
7. 기타일반안건

□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집회공고 — 2000. 11. 29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 - 9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0. 12. 5 (火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○ 2000년도 제3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 예산안

- 고 시 일 자 : 2000. 11. 17
- 고 시 번 호 : 화순군고시 제 27 호

○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— 2000. 11. 20 이송

○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안

— 2000. 11. 20 이송

○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·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

— 2000. 11. 20 이송

- 화순군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— 2000. 11. 20
이송
- 화순군4-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0. 11. 20 이송
-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(고인돌 공원 부지 매입)
— 2000. 11. 20 이송

□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

-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— 2000. 11. 29 의원
발의
 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2
 - 회 기 : 2000. 12. 5. ~ 12. 23 (19일간)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— 2000. 11. 29 의원발의
 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
 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-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— 2000. 11. 30 화순군수
 - 제안이유
 - 2000. 7. 1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
폐율, 용적률, 행위제한 등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어 시행되며 장기
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

용도지역 및 지구제도가 개편되며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규정을 보강하여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

-주요골자

-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개정
-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개정
-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개정
-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
-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, 용적률 개정
-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, 건폐율, 건축물의 규모, 층수 및 높이 개정
-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, 구성 등 개정
-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 개정

※ 2000. 12. 1.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— 2000. 11. 30 군수제출

-제안이유

○ 동조례 제1조(목적)에는 「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」으로 되어 있으나 제12조(장학생의 자격)에는 「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 출신」으로 되어 있어, 제12조의 재능이 우수 「하거나」를 「하나」로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.

-주요골자

○ 조례중 제12조의 재능이 우수 「하거나」를 「하나」로 자구수정

※ 2000. 12. 1.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— 2000. 11. 30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군에서 추진한 기억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여
-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적절한 채무상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-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로 함.
-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은 부채비율이 30%이상은 20/100이상,
20%이상~30%미만은 10/100이상, 20%미만은 제정여건에 따라 사용한다.
-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
※ 2000. 12. 1.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— 2000. 11. 20 군수
제출

-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- 주요골자

○ 예산편성규모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본예산	증 감	비 고
계	114,762	101,639	13,123	
일반회계	102,496	91,694	10,802	
특별회계	12,266	9,945	2,321	

○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: 별첨

※ 2000. 11. 20.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

○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— 2000. 11. 30 의회운영위원회 제안

- 주 문

·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

한 200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· 활동기간 : 2000. 12. 6 ~ 2000. 12. 23 (18일간)

· 구성인원 : 7 명

- 제안이유

-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
- 주문과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제안함

○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— 2000. 12. 2. 의원발의

- 제안이유

- 화순군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정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관리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-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 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
 1.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 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
 3. 군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 4.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 5.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
- 군수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군 세입징수관, 의장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며,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. 군수는 공개경쟁 또는

제한 경쟁방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※ 2000. 12. 2. 총무위원회 심사 회부

○ 화순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— 2000. 12. 2. 의원발의

- 제안이유

- 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 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· 공무국외여행의 범위

-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
-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
- 자매결원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
- 기타 군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

· 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은 군의회 의장이 허가함

·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군의원,대학교수,시민단체 대표등을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

·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 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심의

-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
-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
-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

※ 2000. 12. 2.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회부

○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구의 건 — 2000. 11. 29. 의
원발의

— 주 문

-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다음과같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.

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요구

일 시	보 고 대 상	보고자
2000. 12. 6 (火) 10:00	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,	해당 실·과·소장
2000. 12. 7 (水) 10:00	종합민원처리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	"
2000. 12. 8 (木) 10:00	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, 건설과	"
2000. 12. 9 (木) 10:00	도시경제과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	"

— 제안이유

- 2000년도 군정추진 현황을 정확히 평가,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2001년도 군정 계획 수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
-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

○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반대 결의안

○제안일자 : 2000. 12. 3

○제안자 : 화순군 댐 피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

○결의안 내용 : 별첨